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산정방법을 현실화 함(안 제22조)
-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방법 신설(안 제22조의2)
-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(안 제26조)
- 녹지지역 및 비 도시지역내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확대(안 제 2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(안 제6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등 규정 신설(안 제69조의3)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규정(안 제75조)
-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 설치 허용
(별표 3 ~ 별표 6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13. 3. 13 ~ 4. 2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.(2013.4.26)

5. 검토의견

□ 본 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은,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
- 그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,
 -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산정에 있어 가중평균과 최대경사도를 전체 경사도로 적용한 것과(P. 12참고)
 -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방법 신설(안 제22조의2)
 -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토지 분할 제한(안 제26조)
 -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(축사, 농사용 창고 등 660㎡이내) 확대(안 제29조)
 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, 3회 이상 제한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(안 제69조) 및 위원 위촉 후 해제 규정 신설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 위촉 범위 확대

-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(1종~3종 주거지역, 준주거지역) 설치허용
- 기타 띄워 쓰기, 조항 변경,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1, 2종 구분 폐지,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사항 삭제 등임.

○ 위와 같이 상위법에서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,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이상으로 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